

외국신문평의회 소개

호주신문평의회

I. 신문평의회의 설립배경

호주신문평의회는 1976년 7월 21일, 헌법에서 최초로 언론자유를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1766년), 최초로 신문평의회를 설립(1916년)한 스웨덴의 정신을 이어 받고, 3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영국신문평의회의 조직과 기능 등을 모방하여 설립되었다.

호주신문평의회는, 호주기자협회와 신문발행인들이 모여 많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태동되었는데, 당시에 정관이 채택되었으며 그후 1983년에 수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II. 신문평의회의 구성 및 활동

신문평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의장 1인, 호주기자협회(Australian Journalists' Association)대표 3인, 호주신문협회(Australian Newspapers Council)대표 4인, 호주지방신문협회 (Australian Provincial Press Association)대표 1인, 호주지역 일간신문협회(Regional Dailies of Australia Ltd.)대표 1인, 존 페어작스 앤 선즈사(John Fairfax & Sons Ltd.) 대표 1인과 사회 각계대표(Public Members) 4인으로 구성된다. 원래 평의회 설립당시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1983년에 와서 비언론인 대표 1인과 발행인들이 선임하는 대표 1인을 추가시켜 현재 15인으로 늘어났다.

15인의 위원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14인의 위원은 각각 대리위원을 지명하여 유고시 또는 회의에 불참하게 될 경우 권리와 의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기자협회를 대표하는 위원 3인은 공동으로 대리위원 1인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리위원은 모두 12인이다. 비언론인인 평의회 의장은 설립 당시부터 대법원판사를 지낸 전직법관들이 맡아오고 있다.

호주신문평의회는 소위원회인 불만호소처리위원회 (Complaints Committee)를 산하 기구로 두고 있다. 동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에 의한 일차적인 중재가 실패할 경우 불만호소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회의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여기서 심의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 다음날인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열리는 위원총회에서 최종 평결을 내리게 된다.

호주신문평의회는 불만해소사건을 심의처리 할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정부나 단체의 활동을 면밀히 조사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면 보도자료들을 발행하기도 하며, 입법부, 정부부처의 장관들 그리고 법률개혁위원회 같은 단체에 진정서를 보내기도 한다. 또한 언론자유수호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회의를 준비하기도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III. 불만호소처리절차

불만호소(complaints)란 특정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만호소인은 불만이유를 설명하고 입증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하며, 불만호소배경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불만호소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불만호소인이 불만을 제기할 때 문제된 기사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 사본에는 게재일자가 명기되어야 하며, 문제된 기사내용에 밑줄을 그어 표시해야 한다. 또한 문제기사 사본제출시 불만호소사유서와 부가적 보충자료들도 첨부해야 한다.

2. 불만호소는 문제기사가 공표된 이후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그 기간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불만호소가 지연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이 필요조건이 철회될 수도 있다.

3. 본 평의회는, 불만호소인의 신청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절차가 더 진행되기 전에 불만호소인에게 법정투쟁포기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그때, 불만호소인은 이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게 되며, 가능한 한 주의깊게 고려한 후 서명하기 전에 법률상담을 받아야 한다.

불만호소인의 법적 권리를 포기토록 종용하는 이유는 본 평의회가 법원과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며, 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불만호소인의 신청사건은 법적 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에야 평의회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4. 불만호소에 본 평의회 서류접수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무국장이 각하, 사유를 불만호소인에게 통지해 주게 된다. 이때 불만호소인이 보충서류들을 제출한다면, 사무국장은

관계서류들을 재검토한 후 불만호소처리절차를 진행시켜 나가거나 불만호소처리위원회 (Complaints Committee)와 협의후 신청이 각하되었음을 불만호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불만호소가 하자 없이 접수되면, 평의회 사무국장은 해당 언론사에 연락을 취해 응답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불만호소인과 언론사간에 직접적 협상 혹은 평의회를 통한 협상을 하게 해 주며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 줄 것이다.

본 평의회는 불만호소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 및 자료들의 사본을 해당 언론사에 송부하게 되며, 반대로 언론사로부터 받은 서신 및 자료들의 사본을 불만호소인에게 보내주게 된다. 당사자들은 본 평의회에 요청과 제안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 회신(서신 또는 전화연락)이 두 달 안에 접수되지 않으면 당사자 한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무국장은 불만호소처리위원회에 심의를 맡기게 되며 당사자들에게 출석기일을 통보해 주게 된다. 이 기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6. 당사자들이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때 가능한 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서류나 자료의 분량이 대판양지(약 犯 x43cm)로 5 면을 넘어서게 되면 배부하는데 35 부 이상의 사본이 필요하게 된다.

7. 불만호소처리과정에서의 수수료나 기부금은 일체 없다. 당사자들이 심의회에 참석하게 되면, 재판을 받는 형식이 아니라 원탁에서 토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법률고문이 심의회에 당사자 대리인 출석해서는 안 되며, 증언난문회도 없다. 대부분의 불만호소가 제시된 서류 및 자료에 의해 평결이 내려지며, 평의회 위원들은 회의전에 서류 및 자료들이 충분히 제시됨으로써 올바른 평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당사자들은 서류 및 자료의 전부를 복사해서 평의회 위원 전체와 전 대리인들(총 28명)에게 배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본 평의회는 심의회에 기일을 통보한 후 그 밖의 부가적 자료들을 심의하거나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일을 책임질 수가 없다

8. 불만호소인은 심의회에 직접 출두해야 하며, 회사나 단체가 불만호소할 경우 중견간부급 이상이 나와야 하고 친지나 동료들이 조력자로서 동반 출석할 수 있다. 언론사측에서는 편집 총책임자가 기자나 작가를 동반하고서 출석해야 한다.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기 위해선 다른 한 쪽의 당사자와 평의회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불만호소인은 간결하게 진술해야 하며, 평의회 위원들과 언론사측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며 위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마찬가지로 언론사도 간결하게 진술해야 하며 질문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들은 확정하게 된다.

9. 불만호소처리위원회는 보통 심의회의 다음날 위원총회를 통해 최종 평결을 내리게 된다. 평의회는 결정된 평결문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하고, 보통 모든 신문사들에게 배포하여 평결문을 게재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또한 평결문 게재를 위해 신문발행을 잠시 중단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평의회는 평을 전달하거나 게재하는 일을 제한하는 권한을 유보시킬 수 있다.

IV. 신문평의회 정관

제 1 조 설립취지

호주신문평의회는 본 정관에 명시된 기본원칙에 입각한 방법들을 통해 본정관 제 3 조에 열거된 목표들을 성취시키기 위해 1976년 7월 22일에 여러 단체와 민사들에 의해 설립된 자율적 기관이다.

제 2 조 정의

특별히 문맥상 다르게 암시되거나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정관의 주요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의회」 (the council)- 호주신문평의회를 뜻한다.
2. 「의장」 (the chairman)- 본 평의회 의장을 일컬으며, 의장의 권한을 대행할 때엔 부의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3. 「구성단체들」 (constituent bodies)- 기자협회, 발행인협회 그리고 법인조직이나 개개인의 발행인들을 뜻한다. 이 구성단체들은 본 정관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본 평의회 위원으로 봉직할 인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본 정관뒤에 수록된 구성목록(schedule)에 평의회 구성단체들이 열거되어 있다.

4. 「위원」(ulember)- 평의회 위원을 의미하며, 여기에 의장과 정식위원을 대신할 대리위원(alternate member)도 포함된다
5. 「사회각계대표위원」(public merriber)-본 정관 제 4 조 6 항에 의거해 임명편 위원을 의미한다.
6. 「사무국장」(executive sec 「eta)- 현직 사무국장을 의미한다.
7. 「주」(state) - 호주의 연교주(State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준주(Territory)도 포함된다.

제 3 조 목표

1. (1) 호주신문의 질적 수준을 고차원적 규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기존의 확립된 자유를 보존한다.
 - (2) 신문보도에 대한 불만호소 및 신문사와 언론인의 행위에 대한 불만호소를 심의, 조사, 처리한다.
 - (3) 신문사들이 공익성이 있으며, 중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거나 그런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의 진전을 예의주시한다.
 - (4) 신문의 소유권과 관리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며, 그것들에 대한 통계정보를 공표한다.
 - (5) 적합한 시기에 정부기관, 공공연구소 및 호주국내외의 다른 단체들에게 언론의 자유에 대해 역설할 기회를 갖는다.
 - (6) 본 평의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간행하며, 때때로 신문계의 발전상태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재검토 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단체들과 정보를 교환한다.
- 2, 본 평의회는 비 영리단체이다. 본 평의회의수입과 자산은 단지 본 정관에서 언급된 목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만 쓰여질 것이다. 그리고 돈이나 소유물 또는 평의회의 수입이나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들에 있어서, 위원들에게 합당한 수당의 지급 혹은 평의회에서 수행된 특별직무에 대해서 평의회가 승인한 수당의 지급만을 제외하고는 평의회 위원들에게 또는 위원의 인척, 피신탁인, 대리인에게 그 수익이 분배되지 않을 것이다. 특별한 이유로

인해 본 평의회가 해산될 경우, 부채를 청산한 후 남은 평의회의 순수자산(net assets)은 평기된 바와 같이 자선적인 혹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 분배되어질 것이며, 그와같은 상기가 없을 경우에는 뉴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의 법무장관에게 위임되어 분배되어질 것이다.

제 4 조 위원 임명 (I)

1. 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1) 평의회 구성단체들의 지명으로 평의회에 의해 임명된 인사들

(2) 사회각계를 대표하기 위해 평의회 의장의 지명으로 평의회에 의해 임명된 인사들

(3) 평의회 의장

2. 평의회는 때때로 결정을 통해 구성단체들을 승인하며, 이 구성단체들이 지명해야 할 위원수를 결정한다.

3. 기자협회와 발행인 혹은 발행인협회가 평의회 위원들을 지명할 때에 피지명자 가운데 적어도 2 인이 같은 주에 거주하지 않도록 지명권을 행사해야 한다. 위원 1 인이상의 지명권을 부여받게 되는 기자협회와 발행인협회는 1 개 이상의 주에 지국(branches)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발행인 혹은 발행인 협회에 의해 평의회 위원으로 지명된 인사들 가운데에는, 신문계 종사경험이 있는 인사가 적어도 4 명은 항상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이와같은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본 평의회는 발행인 및 발행인협회에 의한 지명을 거부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발행인 혹은 발행인협회에서는 그 필요조건에 더욱 부합되는 인사를 다시 지명해야 된다.

5. 평의회는 종종 사회각계대표위원의 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자협회 지명으로 임명된 위원수와 사회각계대표위원수를 합해서 발행인협회 지명으로 임명된 위원수와 동일하게 되도록 책정해야 한다

6. 사회각계대표위원들은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공개적으로 공고된 후, 평의회 의장의 지명을 통해 신문계와 관련이 없는 인사들 가운데서 임명되어질 것이다- 또한 지명당시 사회각계대 표위원들 가운데 적어도 2명은 다른 주에 거주하도록 지명되어야 한다.

7. 평의회 의장은 이전에 신문계와 어떠한 관련도 없는 인사들 가운데서 평의회에 의해 임명되어진다.

8. 본 정관 제 4 조 2 항에 언급된 평의회의 결정은 본 정관 제 242 조 정관수정(Alteration of Constitution)에서 설명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9. 구성단체들과 그들의 지명권, 사회 각계대표위원들 수, 그리고 의장의 신원은 본 정관 뒤에 수록된 구성목록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것이 변경될 경우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상보를 근거로 다시 인쇄되어질 것이다.

제 5 조 위원 임명 (II)

1. 위원회 임명 혹은 재임명은 그 임명이 유효할 수 있는 특정일자가 정해지게 된다.

2. 1 개의 구성단체에 의한 위원 1 인에 대한 임명은 서면으로 평의회 의장 혹은 차무국장에게 통보될 것이다.

제 6 조 임시 결원

1. 평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평의회의 위원자격을 상실할 것이다.

(1) 의 장 혹은 사무국장에게 서명으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사무국에 사전 통보없이, 평의회 회의에 연속 3 회 불참한 경우

(3)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혹은 그의 채권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화해한 경우

(4)금치산선고를 받게 된 경우

2. 본 정관은 어느 위원의 사망으로 인한 결원과 본 정관 제 6 조 1 항에서 언급된 사건들로 인해 야기된 결원을 임시결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임시결원이 발생하면 평의회는 즉시 본 정관 제 4 조에서 명시한 위원이명조건에 따라 구성단체들과 의 장이 지 명 한 인사로 그 결원을 채워 야 한다.

제 7 조 위원 임기

1. 단 조항에서 「퇴임하는위원」이란 본 정관 아래서 연속 2 개월의 기간이내에 위원자격이 정지될, 의장이외의 위원을 의미한다.

2. 위원자격이 임시결원상의 여러 조건들에 의해 상실되지 않는 한, 의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임기를 갖게 된다.

(1) 구성단체들에 의해 지명된 위원들은 1,2년 혹은 3년 연속으로 위원직을 수행케 되며, 그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원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나 만약 일정 임기가 지정되어지지 않으면 그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속이 된다.

(2) 사회각계대표위원들은 임명된 후로 3년 연속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위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3) 평의회 의장은 제 8 조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임기동안 재임하게 된다.

3. 퇴임하는 위원은 퇴임시 본 정관 제 4 조의 요조건들을 불만족시킨다면 재지명되거나 혹은 재임명될 수도 있다.

4. 퇴임하는 위원을 재지명하려는 구성단체 혹은 평의회 의장은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기 전에, 본 정관 제 4 조에 따라 그 위원을 재지명해야 한다. 그러면 본 평의회는 그 후임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날짜에 맞추어 재지명된 그 위원을 정위원으로 임명할 것이다.

제 8 조 평의회 의장

평의회 의장은, 평의회와 의장 스스로가 상호 동의한 재임기간동안의 직무수행을 위해 평의회에 의해 임명되어진다.

제 9 조 평의회 부의장

1. 평의회는, 위원임기 만료때까지 혹은 신규 평의회선거때까지 재임하게 될 부의장을 평의회 사회각계대표위원들로부터 선출해야 한다. 위원자격정지로 인해 부의장직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평의회는 편리한 시기를 정해서 부의장 신규선거를 거행해야 한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위원은 재임기간동안 일반위원자격을 계속 보유하고 있게 되며, 1년 임기가 만료되면 평의회는 적절한 시기에 위원총회를 통해 다른 사회각계 대표위원을 새 부의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2. 평의회 의장이 호주에 부재중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한주일 이상 의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의장직이 공석이 될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모든 역할을 대행할 것이며, 직무대행기간동안 의장봉급에 해당되는 액수를 지급받게 된다.

제 10 조 평의회 권할

본 평의회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들을 실행하며, 평의회 목적들을 촉진, 달성시키기 위하여 여러 조치들을 취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제 11 조 대리 위원

1. 구성단체에 의해 지명된 위원은 1인 혹은 그 이상의 대리위원들을 직접 임명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임명을 자신의 임의대로 만료시킬 수도 있다. 대리위원들에 대한 임명 및 임명에 대한 취소는 의장 및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2. 평의회 의장은 사회각계대표위원들을 지명할 때, 각 위원들을 대신할 대리위원들을 함께 지명해야 한다. 그 대리위원은 사회각계대표위원으로서의 필요한 자격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평의회는 의장의 지명을 근거로 대리위원들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임명된 대리위원의 임기는 그에 대한 정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 함께 만료되며, 특별한 경우 의장은 직권에 의해 대리위원직을 취소시킬 수 있다.

3. 어느 위원이 본 정관 제 15 조에 명시된 불만호소처리위원회(complaints committee) 회의를 제외한 평의회 위원총회나 어느 소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하게 될 경우, 그 불참 정위원의 짝으로 임명된 대리위원이 그 회의에 대신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회의에서 정위원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기능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4. (1)본 정관 제 11 조 1,2 항에 의해 임명된, 회의에 불참케 될 정위원을 대신할 대리위원이 최근 대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어느 때라도 2년 계속해서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평의회 정위원으로 봉직했다면, 본 정관 제 11 조 3 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회의에 불참한 정위원을 대신하여 불만호소처리위원회의 회의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불만호소처리위원회 회의에 불참케 될 정위원에 대한 대리위원이 본 정관 제 11 조 4 항 1 호에 따라 권한대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평의회 의장은 그 정위원을 대행할 대리위원을 평의회 구성단체들이 정위원을 지명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만일 불참위원이 사회각계대표위원이라면 의장이 그 위원을 지명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리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3)불참위원을 대신할 대리위원이 앞의 1,2 호에 따라 불만호소처리위원회의 회의에서 .1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면, 본 정관 제 11 조 1 항, 2 항에 의해 임명된 대리위원은 동조 동항에서 제시한 조건(「이 규정의 ~를 제외하고」)이 없었던 것처럼 하여야만 불만호소처리위원회 회의에서 불참위원을 대신한 권한행사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5. 대리위원은 평의회 제반회의에 대한 통보와 평의회 활동관계문서들을 입수할 자격이 있다.

6. 대리위원 1 인이 1 인이상의 정위원들을 대신하여 임명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회의에서 단지 1 인의 정위원만을 대행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7. 정위원 1 인을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한 대리위원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포함될 것이다

8. (1) 대리위원이 사직을 원할 경우, 평의회 의장이나 사무국장에게 서면로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 그 위원직이 상실된다. 또한 대리위원이 본 정관 제 6 조 제 9 3,4 호에서 명시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그 위원직이 취소된다.

(2) 만일 어느 대리위원이 사망하거나 본 정관 어느 조항에 의해 위원직이 취소되거나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그 대리위원 교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의장은 본 정관의 근본취지와 해 당조항들을 고려하여 결원된 대리위원직에 그에 대응하는 정위원과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인사를 적당한 기간을 통해 임명해야 한다.

제 12 조 회의

1. 평의회와 각 소위원회의 회의는 평의회 사무국이나 의장이 그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평의회 임시특별 총회는 7인 이상의 위원들이 서면요청해야만 사무국장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2. 의장이 참석시에는 의장이, 의장부재시에는 부의장이 장의회의 모든 회의에서 사회를 맡게 된다. 그러나 의장, 부의장 동시부재시에는 참석위원들 가운데서 임시의장 1인을 선출해야 한다. 각 소위원회는 그 위원회소속 위원들 가운데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의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선출된 의장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당시 참석한 위원들 가운데서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 13 조 평의회 회의진행절차

1. 평의회는 심의업무와 일반활동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연기하기도 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에 따라 회의를 조정해 나가기도 한다.

2. 평의회 모든 회의에서 거론된 의제들을 본 정관 규정에 따라 투표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3. 위원들에게 1인 1투표권한이 부여되게 된다.

4. 투표결과가 찬반동수일 경우,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2차투표를 실시케 하거나 결정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5. 평의회 회의의 정족수는 의원 7인이다.

제 14 조 관계기관직원의 회의참석

호주신문협회 (Australian Newspapers Council)의 사무국장, 호주기자협회의 사무국장, 또한 본 평의회가 참석을 승인한 그밖의 다른 인사들은 본 평의회 회의에 협의자 자격으로 참석할 수는 있지만 투표권은 부여받지 못한다.

제 15 조 소위원회 (Committees)

1. 본 평의회는 신문필도에 대한 여러 불만호소에 대해 조사하고 심의하여 그 결과를 평의회 위원총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할 불만호소처리위원회(complaints committee)에 소속될 위원들을 자체 위원들 가운데서 지명해야 한다. 동위원회의 위원자격은 때때로 본 정관 제 15 조 (4)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따라 평의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질 것이다.

「불만호소처리위원회 소속위원들의 대다수는 평의회의 사회각계대표위원들과 직권에 의한 위원(ex-officio member) 1 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나머지 위원들로는 기자협회에 의해 지명된 평의회 위원들중 적어도 1 인과 발행인협회나 발행인들에 의해 지명된 위원중 적어도 1 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평의회는 때로 결의를 통해 결정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불만호소처리위원회외의 다른 소위원회들을 구성할 수도 있다.

3. 어느 소위원회라도 평의회에 의해 명백히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는 한 집행권한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다.

4. 평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모든 소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위원이 될 것이다.

제 16 조 재정

평의회의 명의로 발행되는 모든 수표들은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그리고 평의회가 특별히 위임한 다른 사람 가운데 적어도 2 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 17 조 회계

평의회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채무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감사는 평의회가 특별히 지정한 공인회계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감사보고서의 사본은 평의회의 각 구성단체들에게 보내져야 한다.

제 18 조 수당과 교통비

평의회 위원들과 사무국장 및 직원들은 때때로 평의회기금으로부터 평의회에 의해 결정된 합당한 금액의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이 있다.

제 19 조 피신탁인 (Trustees)선정

평의회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기간과 조건에 입각하여, 평의회 이익을 위해 평의회 재산을 관리해 줄 피신탁인으로서 적어도 두사람의 자연인(평의회 위원이어도 무방함) 또는 하나의 회사를 지명해야 한다.

제 20 조 피신탁인에 대한 보상

평의회에 의해 지명된 피신탁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가운데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될 경우, 피신탁인은 그 손실에 대해 평의회기금으로부터 보상받을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제 21 조 사무국의 직원

평의회 행정업무는 1인의 사무국장과 필요할 경우 평의회가 결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고용된 1인의 직원에 의해 처리되게 된다.

제 22 조 위원자격설사 및 활동유효여부

1. 위원들이 임명된 후에, 임명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거나 위원들 가운데 자격미달위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미 그 위원이 평의회위원자격을 부여받은 후라면 그 위원이 참여했던 평의회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이런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유효하게 될 것이다.
2. 본 평의회는 그 자격미달위원이 제명되더라도 계속 활동할 것이다.

제 23 조 평의회 해산

평의회는, 평의회 자율 특성과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여겨지거나 혹은 평의회 기능을 계속해서 부적당하게 만드는 어떤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여겨지게 되면, 어느때라도 위원들에 의해 평의회를 자체적으로 해산할 수 있다. 본 평의회 해산에 대한 진정은 해산여부 결정목적으로 소집된 회의에 참여한 평의회 위원들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된다. 그러나 여기서 2/3 찬성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해산여부결정목적으로 소집되는 회의는 적어도 21일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이 통보에는 회의소집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평의회는 동회의 소집시 각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구성단체의 사무국장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평의회는 결의를 통해 해산을 실행함에 있어 본 정관 제 3 조 (2)항에 따라 평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 및 분배문제를 결정해야하므로, 비록 해산기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자산에 대한 처분과 분배문제까지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세부절차를 따를 때에는 본 정관 제 13 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제 24 조 정관 수정

본 정관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는 평의회 위원총회의 결의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정관수정에 대한 결정도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데, 여기서 2/3 찬성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관조문수정제안자는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도 28 일전에 각 위원들과 평의회 구성단체들의 사무국장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관조문수정이 유효하지 못하다

제 25 조 회의에 대한 통보

평의회 제반의에 대한 통보는 사무국장에 의해 각 위원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위원들이 특별히 원하지 않는 한, 모든 회의에 대한 통보는 7 일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통보는 우편 혹은 보로 이루어 지는데, 우편 의한 통보는 부친 후 48 시간 이내에, 전보에 의한 통보는 급송 후 24 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회의에 관한 통보를 받아 볼 권한이 있는 위원이 우연히 누락되어 통보받지 못했거나, 혹은 평의회 사무국장이 통보하긴 했으나 위원측이 불찰로 인해 통보받지 못한 경우, 통보된 후 진행된 회의의 결과는 무효화될 수 없다.

V. 신문평의회 원칙선언문

본 평의회는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들의 윤곽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언론의 공표의 자유는 바로 국민들에게 알릴 자유를 의미한다.

○ 앞의 선언은 언론자유를 민주사회외 근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된다.

○ 언론자유는 신문에 부여하는 권리 때문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해 신문이 수행해야 할 의무 때문에 근본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 호주신문평의회는 언론의 책무를 인정하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저널리즘의 올바른 규범들

을 지키지 못해서 야기된 불만호소사건들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 본 신문평의회는 불만호소사건들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고려할 것이다.

1. 신문의 독자들은 신뢰할만한 뉴스와 논평을 제공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므로 신문들은 보도에 있어 양심적이고 공평해야 하며 국민들 개개인의 권리와 감수성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2. 신문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리고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용가능하며 정당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강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3. 소문이나 확신할 수 없는 기사들이 공표되어지려면, 그 기사의 진실성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그 기사의 공표가 부당한 것이

라고 판단되어지면 결코 게재해선 안 된다.

4. 부정직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들, 혹은 확신할 수 없는 간행물들을 공표해선 안 된다.

5. 신문은 논쟁되어지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자사의 견해를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 독자들을 다음과 같이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가)사실적 주장과 논평적 주장을 확실히 구분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나)신문은, 독자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사실들을 부정확하게 언급해서도 안 되며 은폐해서도 안 된다.

(다)신문기사의 본문이나 제목이 진실을 왜곡해서도 안 되며, 불공평하게 채색되어서도 안 된다.

(라)표현되어진 견해가 누구의 견해인지 확실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6. 신문을 광고하는 게시판이나 포스터로 인해 시민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7. 신문은 품위문제에 있어 폭넓은 식별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품위부족을 정당화함으로써 언론자유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8. 특정 지역사회나 집단에 관한 신문보도에 있어, 그들의 성, 인종, 국적, 종교, 피부색 혹은 혈통 등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실는 것은 윤리규범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

9. 신문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한, 피의자, 구속기소된 자, 유죄확정된 기결수의 인종, 국적 혹은 종교적, 정치적 견해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10. 어느 개인, 법인, 조직, 집단 혹은 어느 계층의 명예와 재정적 이익에 손실을 끼치는 문제가 신문에 공표되면, 이에 대한 현저한 크기의 해명문이 관련신문에 신속하게 게재되어야 한다.

11. 부정확한 정보공개로 인해 특정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켜 주기 위해 현저한 크기의 사과 및 취소문, 정정보도문, 해명문 등의 기사가 신속하게 게재되어야 한다.

12. 본 신문평의회는 호주기자협회가 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특별한 관심을 맡고 있으며, 그것의 정당성을 승인하는 바이다.

○ 본 평의회는, 본 평의회가 내리는 평결이 신문의 양심과 시민의 합법적 요구를 모두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본 평의회 평결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모든 신문사들에 의존된다. 이와같은 평의회 공정성과 용기는 시민으로 하여금 언론자유에 대해 더욱 주목하게 만들 것이다.

○ 본 평의회는 자유롭게 공표할 수 있는 비판 이외에는 어떠한 제재권도 갖지 않는다. 하지만 본 평의회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권을 갖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여긴다. 현재 본 평의회 유일한 권위는 「도덕적 권위 (moral authority)」 뿐이며, 평의회 평결이 장점을 살려 실행되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본 평의회 활동목적은 전 신문사들이 평의회에 협조하여 언론자유가 호주 민주주의의 호위병으로서 시민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VI. 호주기자협회의 윤리강령

1. 뉴스를 보도하고 논평하는데 있어 신중하며 정직해야 한다.
2. 근본사실에 대한 보도를 금해선 안 되며, 생략 및 강조를 잘못 함으로써 진실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
3. 모든 상황에서 확신을 존중해야 한다.
4. 기자들 사이에선 항상 동료애를 유지하며,기자협회의 동료회원들을 결코 부당하게 이용해선 안 된다.
5. 어떤 형태의 뇌물이라도 결코 받지 말아야 하며, 기자의 정의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사적 이해관계를 결코 인정치 말아야 한다.
6. 정보와 사진들 그리고 여러 문서들을 취득하는데 있어 오직 정직한 방법들만을 사용해야 한다.
- 7 어느 개인과 보도를 위한 대담을 하기 전에, 언론사를 대표한 자로서의 기자신분을 밝혀야 한다.
8. 기자들은, 시민들이 기자직업의 정직성과 존엄성에 대해 항상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간안내

언론중재사례집 제 5 집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분쟁을 중재한 내용을 유은 「언론중재사례집」 제 5 집을 6 월 말 에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는 지난 6년 동안 처리한 총 344 건 중 49 건(1986년)의 중재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49 건의 후해사에는 일간신문 21 건, 방송 5 건, 주간신문 4 건, 주간지(지) 9 건, 월간지 10 건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잡지모체의 허위수기게재, 인터뷰기사조작, 초상의 무단게재 등은 보도윤리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고 있다.

<4X6 배판, 164 면 비매품>

『한국미디어 어문화비평』

원우현 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커뮤니케이션학에 있어서 여론 및 선전과 유언비어에 관한 저서들을 펴낸 바 있으며 미디어 문화현상에 관심을 보여 온 저자가 정보사회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비평을 한데 엮었다. 정보사회의 전망, 신문의 신뢰와 사회여론, 방송문화의 공공성과 공익성, 산업사회와 광고문화, 한국대 중문화의 진단, 여론과 홍보 등의 각론으로 나누어 미디어문화를 여러 각도에서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한 바람직한 문화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나남간· 5 천 3 백원)

『제 3 세계 커뮤니케이션론』

서정우·강상현 공역 (연세대 신방과 교수, 동대장원 박사과정)

윌리엄 스토버의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Trird Wor 를 번역한 역서이다. 학문적 측면에서 제 3 세계 커뮤니케이션자료가 부족한 국제커뮤니케이션영역을 보충해 주고 있으며, 실제적 측면에선 커뮤니케이션 기술도입과 관계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하나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질서, 수단적 측면과 주요가피를 열거하며 진정한 발전적 요건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나남간·4 천원)